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발의연월일 : 2015. 11. .

발 의 자 : 허정행 위원

1. 주 문

가.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 이하로 하며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7조제2항